

KOTRA 국가정보

뉴질랜드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뉴질랜드(New Zealand)
면적	269,036 km ² (자료원 : 뉴질랜드 국토정보원, 2019 기준)
수도	웰링턴(Wellington),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인구	5,084,300 명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2020.11. 기준)
민족(인종)	유럽인 70%, 마오리 16%, 아시안 15%, 태평양 도서국 8%, 기타 3%
언어	영어, 마오리어
종교	기독교(47%), 힌두(2%), 기타 여러 종교 및 무교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12~2월 평균 20~25도, 6~8월 평균 12~16도)
국가원수	여왕: 퀸엘리자베스 2세(Queen Elizabeth II) 총독: 팻시레디(Patsy Reddy) 총리: 자신다아던(Jacinda Ardern)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2-03-26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뉴 FTA	2015-12-20	한-뉴 FTA 정식 발효	
관세상호인정협정	2011-06-01		
영화공동제작협정	2008-09-01		
군수협력협정	2007-11-05		
농림부간협력약정	2007-04-26		
경찰협력약정	2006-06-02		
영화공동제작 약정	2005-11-07		
범죄인인도조약	2001-04-15		
방산물자품질보증약정	2000-11-20		
형사사법공조협정	2000-03-15		
취업관광사증협정	1999-05-10		
과학기술의정서	1997-09-08		
임업협력협정	1997-04-07		
사증면제협정	1994-08-01		
항공협정	1993-08-16		
이중과세방지협정	1981-11-01		
국제운수소득면세협정	1978-12-01		
어업협정	1978-03-15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	1967-07-10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뉴질랜드 국회, 대한민국 국회〉

한국교민 수

35,664 명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2020년 11월 확인가능 최신자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견고한 정치, 안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장관급을 포함한 양국정부 대표부서 간 회의가 정례화되어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군수산업분야 협력 추진을 비롯해 인적 교류, 과학기술, 영화,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뉴질랜드 국빈 방문

-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국빈 방문(2018년 12월 2일~12월 4일)하여 정상회담,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uckland를 경유하여 12월 3일 동포 간담회, 12월 4일 Jacinda Ardern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수행하였다.

- 양 정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동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 및 사회보장협정을 연장하여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들에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Jacinda Ardern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지난 1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의를 표하며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뉴질랜드는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협력방안 논의

- 2020년 4월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코로나19와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조치 결과에 대해서 공유했으며, 뉴질랜드에 있는 700여 명의 한국교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가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 피터스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 안전하게 치러진 총선에 대해 축하하고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방역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경제

○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개최

- 2019년 5월 2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14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성과를 논의하고 향후 건설적인 협력방안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 주요 교역 분야인 농수산물, 과학기술, 교육, 영화, 남극개발 등에 대한 협력사업에 대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경제공동위를 통해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양국 경제정책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APEC, CPTPP 등 글로벌 무역 협력 및 WTO, G20, 기후변화, 브렉시트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뉴질랜드 경제사절단 방한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에 대한 협력

- 2019년 11월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수출진흥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4D기술, 건강로봇공학, 농업기술, 디지털 영화기술 및 공동 남극 연구 및 수소 경제 등 신산업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 분야에서 첨단 수소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뉴질랜드 정부 및 뉴질랜드 에너지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청정 수소 교역 개발에 대한 협업 의향서를 한국 측 컨소시엄에 전달했다.

○ 한-뉴질랜드 방위산업분야 협력

- 2019년 6월 3일 방위사업청은 뉴질랜드 국방부와 '군용물자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당시 군수분야 물자협력 약정은 양해각서 성격의 합의문으로, 양국의 방위산업분야 관계 발전, 군용 물자 공동생산 등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당 약정 체결은 한국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뉴질랜드와의 방위산업분야 경제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현대중공업 뉴질랜드에 군수지원함 인도

- 2020년 6월 10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지원함이 울산을 출발해 뉴질랜드에 공식 인도되었다. 출항식에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방위사업청 성일 국제협력관 등이 참석하였다.

-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뉴질랜드 해군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 함정인 '아오테아로아(Aotearoa)'함은 뉴질랜드 해군의 해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특히 남극에서 작전 수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 전하였다.

문화

- 2020 K-Culture Festival 개최

- 2020 K-Culture Festival' 행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제작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K-POP 콘테스트가 진행되는 등 비대면으로 우리 문화를 현지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019 K-Culture Festival 개최

-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9 K-Culture Festival' 행사를 7월 6일에 수도인 웰링턴시 Michael Fowler Centre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최신 K-Culture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 전통한복 패션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의상이 가진 아름다움을 소개하였으며 최근 더욱 뜨거워진 한류의 열풍을 느낄 수 있는 K-POP 콘서트와 비보이 퍼포먼스를 통해 현지 뉴질랜드 젊은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 특히 하이라이트 행사로 펼쳐진 K-POP 경연대회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여러 팀이 참여 열띤 경쟁을 펼치기도 했으며, 불고기 떡볶이 등의 전통음식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와 유망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오uckland 무역관 홍보부스는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이번 행사는 사전에 SNS 등을 활용한 행사 프로그램 소개와 각종 영상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보다 많은 현지인의 참여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4.16	3.77	3.16	2.3	-
명목GDP (십억\$)	185.06	200.47	203.13	204.67	-
1인당 GDP (PPP, \$)	37,814.07	38,742.79	40,095.72	40,942.57	-
1인당 명목 GDP (\$)	28,982.5	41,381.81	41,204.71	40,634.14	-
정부부채 (% of GDP)	33.53	31.59	29.84	29.6	-
물가상승률 (%)	0.64	1.85	1.6	1.44	-
실업률 (%)	5.13	4.7	4.28	4.34	-
수출액 (백만\$)	33,740.17	38,063.11	39,673.37	39,516.92	-
수입액 (백만\$)	36,062.61	40,114.64	43,790.12	40,481.35	-
무역수지 (백만\$)	-2,322.44	-2,051.53	-4,116.75	-964.43	-
외환 보유고 (백만\$)	17,808.38	20,683.74	17,656.59	17,813.5	20,383.07
이자율 (%)	1.75	1.75	1.75	1	0.25
환율 (자국통화)	1.44	1.41	1.45	1.52	1.64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 GDP 경제 성장률

- 정부는 2020년 경제전망 보고서(2019.12.)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통계청은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을 -12.2%라 발표(2020. 9.17.)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수요가 급감했고 수출 성장세 역시 줄어들면서 뉴질랜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국내 지역 간 이동 조치는 해제된 상황이나 여전히 국경은 폐쇄된 상태로 숙박/외식/항공 등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웨스트팩 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을 -16%로 예

상하고 있으며, ASB 은행은 -17%, ANZ은행은 -19%로 전망하며 2분기도 경기는 큰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실업률

- 뉴질랜드 통계청은 2020년 2분기 실업률을 5.3%로 발표(2020.11.)했다. 본격적인 락다운 조치와 국경폐쇄가 이뤄진 이후의 실직자 수가 반영되어 전 분기 대비 다소 증가한 수치로, 관광산업과 연관된 회사들에서 구조조정이 늘고 있으며, 2020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자 수는 15만 명에 이르고 있다.

○ 소비자 물가지수와 경기 신뢰지수

- 통계청이 2020년 10월 발표한 3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1.4%를 기록해 전 분기인 6월의 1.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에 걸친 락다운 기간 중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과 운송비용의 상승이 있었으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소비자들의 주택임대 및 모기지 등의 비용 부담이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NZ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는 84포인트로 전년 평균이 120포인트였던 것에 반해 36포인트 하락을 보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안정과 소득의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수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포인트로, ANZ의 조사에서 70%의 소비자들은 현시점에서의 가계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소매점들 역시 락다운 조치 이후 사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소비심리 진작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와 정부의 지원정책

- 뉴질랜드는 정부는 3월 20일부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하는 국경봉쇄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은 없는 상황이다. 관광산업은 뉴질랜드 GDP의 1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국내이동이 허용되고 있기는 하나 숙박, 식당, 항공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 2020년 3분기 기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 교역량은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9월 대중국 수출액은 7.4억 미국달러를 기록했으나 2020년 9월 대중국 수출액은 6.6억 미국 달러로 나타났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의 진작과 실직자들의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총 80억 미국달러에 해당하는 이 경기부양책에는 기업지원과 일자리 관련 보조금, 가계 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소비 진작 지원금과 의료 긴급비용이 포함되었다.

경제 전망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전망

- EIU 뉴질랜드 Country Report(2020. 9.) 에 따르면 2020년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4.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상황에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경폐쇄와 지역 간 이동금지 조치 등으로 내수경기가 후퇴하며 위축, 중앙은행(RBNZ)은 기준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도 로벌시장과의 교역 둔화와 내수시장경기의 악화로 힘든 시기를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점진적인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

- 락다운 조치가 해제된 상황에도 여전히 국경폐쇄 조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2021년 초까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국경개방의 추진 중에 있어 양국 간의 이동을 통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일정 부분 관광업계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앙은행(RBNZ)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 1.00%P의 기준금리를 0.25%P로 인하했으며, 재무부도 2020년 정부예산(NZ Budget 2020) 중 190억 미국달러를 주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에 반영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쓰고 있어 2차 확산 등의 추가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브이자(V)자 형태의 회복 곡선을 그리며 연말까지 경기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563,399,033
2	오스트레일리아	5,757,638,918
3	미국	3,685,678,860
4	일본	2,070,151,129
5	대한민국	1,039,215,379
6	영국	1,017,895,497
7	싱가포르	783,157,847
8	Other Asia, nes	756,827,508
9	인도네시아	604,245,451
10	타이	574,308,447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482,092,412
2	오스트레일리아	6,252,046,301
3	미국	3,781,110,947
4	일본	2,275,543,382
5	대한민국	1,059,761,551
6	영국	1,028,107,240
7	홍콩	875,990,610
8	싱가포르	810,017,473
9	Other Asia, nes	800,959,076

10	말레이시아	721,972,133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9,651,059,359
2	오스트레일리아	6,343,083,565
3	미국	3,825,042,579
4	일본	2,423,871,089
5	대한민국	1,209,962,094
6	영국	1,072,926,705
7	싱가포르	881,155,494
8	Other Asia, nes	834,679,333
9	홍콩	789,347,137
10	말레이시아	711,695,02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1,040,240,793
2	오스트레일리아	5,760,808,537
3	미국	3,786,180,986
4	일본	2,321,812,884
5	대한민국	1,118,717,265
6	영국	1,000,740,040
7	홍콩	925,332,926
8	싱가포르	916,803,288
9	Other Asia, nes	773,267,452
10	말레이시아	732,982,91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203,335,678
2	오스트레일리아	4,534,231,787
3	미국	4,081,071,003
4	일본	2,556,765,029
5	독일	1,747,365,421
6	타이	1,623,140,362
7	대한민국	1,532,614,014
8	영국	1,017,574,081
9	싱가포르	998,800,502
10	말레이시아	936,752,925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7,748,409,059
2	오스트레일리아	4,910,882,544
3	미국	4,286,934,684
4	일본	2,960,722,341
5	독일	2,142,501,614
6	타이	1,889,661,278
7	아랍에미리트	1,422,244,389
8	대한민국	1,421,113,639
9	싱가포르	1,371,513,339
10	말레이시아	1,255,399,69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643,466,170
2	오스트레일리아	5,018,780,551
3	미국	4,424,715,176
4	일본	3,036,359,307

5	독일	2,209,923,416
6	대한민국	2,003,616,174
7	아랍에미리트	1,986,869,810
8	타이	1,921,333,528
9	싱가포르	1,476,143,591
10	말레이시아	1,447,402,43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542,970,132
2	오스트레일리아	4,910,657,220
3	미국	4,285,005,406
4	일본	2,811,870,633
5	독일	2,391,920,370
6	타이	1,792,980,218
7	아랍에미리트	1,759,312,398
8	싱가포르	1,671,596,134
9	대한민국	1,649,327,737
10	말레이시아	1,352,149,804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3,158,272,133
2	44032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1,625,519,195
3	020230	뼈 없는 것	1,573,036,286
4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1,185,962,258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85,537,590

6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928,809,982
7	040510	버터	921,860,815
8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882,529,129
9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875,162,638
10	040590	기타	784,319,835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206,413,902
2	440321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885,105,939
3	020230	뼈 없는 것	1,637,285,391
4	040510	버터	1,346,754,986
5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290,140,537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69,075,305
7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1,174,360,243
8	040590	기타	1,012,961,298
9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23,174,803
10	040210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897,056,02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228,803,896
2	440321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70,217,689
3	020230	뼈 없는 것	1,703,222,445
4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1,521,714,937
5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513,230,699
6	040510	버터	1,431,436,427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49,015,562

8	040590	기타	1,164,441,919
9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29,578,979
10	190110	영유아 · 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917,235,150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4,687,036,341
2	440321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931,730,111
3	020230	뼈 없는 것	1,847,051,258
4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1,775,260,795
5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1,574,643,982
6	040510	버터	1,269,977,428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15,147,280
8	190110	영유아 · 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112,833,037
9	040590	기타	1,023,707,290
10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944,119,747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771,365,944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1,515,148,545
3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782,877,470
4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69,944,800
5	271019	기타	634,801,831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67,039,525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57,724,479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519,307,285

9	300490	기타	495,776,571
10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53,172,62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211,318,456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755,980,713
3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62,071,653
4	271019	기타	797,747,270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71,810,278
6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645,356,409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30,426,845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65,112,874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15,113,725
10	300490	기타	494,121,83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934,265,792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705,331,786
3	271019	기타	1,337,795,963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884,847,887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20,250,197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723,889,316
7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637,871,052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35,284,344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519,149,026

10	300490	기타	509,867,139
----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803,287,929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510,614,259
3	271019	기타	1,070,121,943
4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852,605,955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753,832,937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84,987,489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30,334,430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23,516,468
9	300490	기타	513,320,895
10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81,751,482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1,305	1,098	207
2017	1,306	1,214	92
2018	1,744	1,380	364
2019	1,392	1,300	92
2020	1,235	1,003	23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61	선박	0	1	-1
2	1331	휘발유	270	0	270
3	1332	경유	273	0	273
4	7411	승용차	204	0	204
5	7251	건설중장비	51	0	51
6	2140	합성수지	45	0	44
7	1333	제트유및등유	64	0	64
8	8352	축전지	22	0	22
9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21	0	20
10	6222	동조가공품	7	0	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61	선박	242	0	242
2	1331	휘발유	199	0	199
3	1332	경유	196	0	196
4	7411	승용차	144	0	144
5	7251	건설중장비	34	0	34
6	2140	합성수지	32	0	32
7	1333	제트유및등유	25	0	25
8	8352	축전지	21	0	21
9	6900	기타철강금속제품	17	0	17
10	6222	동조가공품	15	0	1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243	낙농품	0	231	-232
2	0311	원목	0	234	-235
3	0116	과실류	1	96	-96
4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153	-153
5	0221	가축육류	0	98	-98
6	0242	꿀및로알제리	0	41	-41
7	2511	펄프	0	47	-47
8	0245	단백질류	7	26	-20
9	0233	동물성한약제	0	32	-32
10	1322	유연탄	0	39	-4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243	낙농품	0	204	-204
2	0311	원목	0	162	-162
3	0116	과실류	0	107	-107
4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96	-96

5	0221	가축육류	0	85	-85
6	0242	꿀및로알제리	0	37	-37
7	2511	펄프	0	35	-35
8	0245	단백질류	4	29	-25
9	0233	동물성한약재	0	26	-26
10	1322	유연탄	0	22	-2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뉴질랜드-한국 FTA	한국	2015-03-23	2015-12-20	
뉴질랜드-호주 Closer Economic Relations(CER)	호주	1982-12-01	1983-01-01	기존 뉴질랜드-호주 FTA 대체
뉴질랜드, 싱가포르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싱가폴	2000-11-14	2001-01-01	
뉴질랜드, 태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태국	2005-04-20	2005-07-0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P4)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2005-06-03	2006-05-28	
뉴질랜드-중국 FTA	중국	2008-04-07	2008-10-01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2009-10-26	2010-08-01	
뉴질랜드, 홍콩, 중국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홍콩, 중국	2010-03-29	2011-01-01	
뉴질랜드-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2018-03-08	2018-12-30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FTA list in force)>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뉴질랜드-EU FTA	EU 소속 28개 국가	2009년 뉴질랜드 제안에 따라 2015년 초기협상을 진행함. 2017, 2018 지속협상 후, 2019년 1월 자신다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EU 의장은 연내 합의에 대한 공동목표 의지 확인 2020년 3월 30일 부터 4월 9일 까지 화상회의를 통해 제 7차 협상 진행 완료	
뉴질랜드-인도 FTA	인도	2010년 초기협상이 열렸으며 2015년, 2016년 까지 후속 협상이 진행되었고 이후 추가 협의 진행 없음	

뉴질랜드-RBK FTA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2010년 초기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우크라이나와 크라메니아 사태로 현재 협의 중단 상태	
뉴질랜드-중국 FTA Upgrade	중국	2008년 FTA 협정 이후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3배 이상 증대됨에 따라 기술, 환경, 서비스 분야 등 협정 영역 확대 중 2019년 10월 9번째 라운드 협상이 북경에서 진행됨	
뉴질랜드-태평양 동맹 FTA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2011년 부터 추진되어 협상 진행 중 2018년 11월 최고 협상담당자 페루 리마에서 협상진행한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2020년 11월 4차 RCEP 정상회의 통해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국이 이날 RCEP 협정에 서명 2012년 아세안 협정에서 발제되어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의 협정 타결	
뉴질랜드-United Kingdom FTA	영국	2020년 6월 17일 뉴질랜드는 영국과의 FTA 협상 이 개시되었음을 외교부 무역협정정보란을 통해 발표. 1차 공식 협상은 2020년 7월 13일 진행될 예정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부 (Timeline for trade negotiations)>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뉴질랜드 관세청은 관세 및 소비세법(Customs and Excise Act 1996) 및 각 정부기관의 법률적 기준에 따라,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는 아래 품목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 Agricultural items and foods,
 - 검역법, 식품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 반입 제한 및 금지
 - 관련기관: 1차 산업부
- Antarctic toothfish and Patagonian toothfish
 - 국제협약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1차 산업부
- importing brushes that contain animal hair or bristle (Anthrax prevention)
 - 미승인 품목 반입 제한(탄저균 예방관련)
 - 관련기관: 1차 산업부
- Chemical Weapons and chemicals that ma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chemical weapons
 - 국제협약 및 화학무기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외교통상부
- Chewing tobacco
 - 금연환경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건부
- Cloned or hybrid human embryos
 - 인간보조생식기술법에 의해 인간복제 배아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건부
- Controlled drugs and utensils
 - 약품남용법에 의한 미승인 약품 및 기구 반입제한
 - 관련기관: 보건부
- Dog tracking devices
 - 주파수 간섭 가능성 이유로 개 추적장치 반입금지
 - 관련기관: 기업혁신고용부

- Dogs
 - 개관리법에 의한 일부 품종의 개 반입제한
 - 관련기관: 내무부
- Endangered Species
 - 희귀동물군거래법에 의한 멸종 위기의 동물군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존부
- Explosives, including firework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False or misleading goods
 - 공정거래법에 의해 표기사항 오류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소비자보호부
- Hazardous substance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Hazardous wastes
 - 수출입(제한) 금지명령에 따라 위험폐기물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Laser Pointer(High Power)
 - 휴대용 고출력의 레이저포인터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건부
- Marine mammals such as seals, whales, dolphins, porpoises
 -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반입금지
 - 관련기관: 보존부
- Money
 - 허가받지 않은 1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현금 반입 제한
 - 관련기관: 경찰청
- Motor vehicles with inaccurate odometers
 - 주행기록 조작된 자동차 반입금지
 - 관련기관: 소비자보호부
- Objectionable material
 - 음란, 폭력성이 있는 영상물, 출판물 반입금지
 - 관련기관: 관세청
- Ozone depleting substances and goods containing these substances
 - 오존층보호법에 의해 오존층 파괴 가능성 있는 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스톡홀름 협약 및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children's crayons, finger paints, and watercolour paints

- 위험물질관리법에 의해 독성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환경보호청

○ Prescription medicines

- 의약법에 의해 처방의약품의 반입제한
- 관련기관: 보건부

○ Prison Goods

- 교도소 노동자들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제한
- 관련기관: 관세청

○ Radio jamming equipment

- 미허가 주파수 방해장치 반입금지
- 관련기관: 경제개발부

○ Radioactive materials

- 방사선보호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방사성 물질 반입금지
- 관련기관: 국립방사선연구원, 보건부

○ Southern bluefin tuna

- 남방 참다랑어 보존 협약에 의거 반입금지
- 관련기관: 1차 산업부

○ Trout and trout products

- 송어반입금지명령에 의해 10kg 미만의 비매용을 제외한 송어 및 관련 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 보존부

○ Tyres

- 뉴질랜드 규격에 미달하거나 제품 표기가 지워진 타이어 반입금지
- 관련기관 : 경제개발부

○ UN sanctions

- 유엔제재조치를 받은 품목 반입금지
- 관련기관 : 외교통상부

○ Unsafe goods

- 뉴질랜드 규격 검정을 받지 않은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반입금지
- 관련기관: 소비자보호부

○ Weaponry

- 미허가 무기류 반입금지

- 관련기관: 경찰청

상세 품목별로 뉴질랜드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아래 뉴질랜드 관세청 제공 금지품목 pdf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ustoms.govt.nz/globalassets/documents/tariff-documents/the-working-tariff-document-prohibitions-and-restrictions.pdf>

[금지품목관련 관세청 링크] <https://www.customs.govt.nz/personal/prohibited-and-restricted-items/>

(자료원: 뉴질랜드 관세청, 2020년 11월 확인 가능 최신 자료)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HACCP 기반 RMP(Risk Management Programme), FSP(Food Safety Programme)

○ 인증마크 및 인증대상품목

- RMP 인증은 동물성 식품제조 및 유통, 수출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FSP 인증은 비동물성 식품 제조 또는 식품 내수유통, 식품 수입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제조업에만 강제규정이 적용된다.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 여부는 1차산업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RMP와 FSP는 각각 2000년, 1996년에 도입됐으며 1차산업부에서 인증을 담당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HACCP 기반의 RMP, FSP 시스템 구비 → 1차산업부에 신청 → 1차산업부 감사 → 1차산업부 승인 및 인증 →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

- 소요기간: 6개월 이내

- 비용: 시스템 구비에 5,000~10,000뉴질랜드달러 소요, 그 외에 주기적인 MPI 감사에 따른 비용이 청구됨.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해당 인증 없이는 식품 제조가 불가능하다. 해당 인증은 1차산업부의 주기적인 감사를 받게 되며, 문제 발생 시 사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식품 수입 및 유통에 관한 FSP의 경우, 임의 규정이기에는 하나 현지 주요 대형마트 납품 시 해당 인증을 필수로 요구한다.

2) Medsafe(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 인증마크 및 인증 대상품목

-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 법(the Medicines Act 1981) 및 의약품 오남용방지 법(the Misuse of drugs Act 1975) 등을 통해 규제한다. 별도의 마크는 없으며 인증 여부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Medsafe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법의 집행은 Medsafe가 담당한다. 안전 표준을 인증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주를 비롯해 유럽(EU), 싱가포르, APEC 회원국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특정 품목이나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해당되지 않는 품목과 자국의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표준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 수입에 대

해서는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고 등록제를 채택한다. 즉, 수입상은 수입품 유통 30일 전에 메드세이프의 WAND(Web Assisted Notification of Devices)에 등록하면 된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Medsafe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12~24개월 정도 소요
- 비용: 품목에 따라 30,000~80,000뉴질랜드달러 소요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강제인증으로 미인증 시 제조, 수입, 유통이 불가능하다. 미백 치약, 주름개선 화장품 등과 같은 기능성 제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취급돼 Medsafe 인증이 필수이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3) WaterMark Certification Scheme

- 인증마크 및 인증대상품목

- 상수시설에 사용되는 파이프, 수도꼭지 제품은 호주의 Watermark 인증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 시기

- 상수 시설 제품의 인증 집행과 관련해 뉴질랜드는 호주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테스트와 인증 발급을 호주의 Sai Global이 담당하고 있다.

- 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 절차: Sai Global에 신청 → 적합성 검사 → 승인
- 소요기간: 평균적으로 약 12~24개월 정도 소요
- 비용: 품목에 따라 3,000~10,000뉴질랜드달러 소요되며 인증 발급 후 연간 갱신비용이 추가로 발생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 상수도과 관련된 제품은 강제인증으로 미인증 시 제조,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TBT

뉴질랜드의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뉴질랜드 정부 및 관련 산업 협회는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바이어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1) 건축자재 인증제도 BRANZ

BRANZ는 목재 소재가 대부분인 뉴질랜드 주택과 건물의 안전 규제를 위한 민간 인증이며 인증 취득에 높은 비용과 장기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정부 규제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건설업계에서 BRANZ만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인증 없이는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민간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설계업체가 정부에 건축 승인을 신청할 시에도 대부분 BRANZ 여부로 사용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기 제품 인증 제도 RCM

2013년 3월 1일자로 기존 전자제품 C-Tick 인증을 대체하였으며 호주, 뉴질랜드에서 사용되고 있다. RCM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요구하는 필수인증이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나, 제품하자로 문제가 생길 시 수입업자의 면책용으로 사용되며, 인증 미취득 시 현지 제품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 중요한 인증으로 볼 수 있다. 인증 절차는 호주 정부의 인증기관 (Standards Australia)에서 전자제품 규정 준수 인증 AS 4417을 획득한 후 호주 전기규제 허가청(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에 등록을 마치면 RCM 마크 획득 가능하며 품

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취득 기간은 약 3~6개월, 평균 취득 소요 비용은 NZ 1.2만 달러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뉴질랜드는 농업, 임업 및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며 목재, 소고기 및 낙농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이들 1차 산업은 정부 보조 없이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등 전 부분의 교역 자유화를 주장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무기류, 동식물 같은 수입금지품목 등을 제외하면 수입이 자유롭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단, 일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5~10%대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WTO 권고에 따라 점진적인 인하를 단행 중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뉴질랜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vt.nz)에서 파악할 수 있다.

○ 관세율 조회 시스템 정보 (HS-CODE 입력 시 손쉬운 조회)

- HS CODE를 알고 있을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한다.
- 뉴질랜드로의 수입을 선택하고, 관련 코드를 Product Description에 기입한다.
- 하위코드 등이 상세 조회되면, 품목 상세와 일치하는 코드를 클릭해 상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ariff-finder.govt.nz/>

○ 상세한 뉴질랜드 관세율 정보 알아보기 (2020년 8월 뉴질랜드 관세청 웹사이트 메뉴 기준)

- 이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세율 검색방법은 관세청 사이트 URL로 접속한다.
- Home 메뉴에서 상단 메뉴바 중 Business 탭을 클릭한다.
- 하위 메뉴 중에서 Tariffs 항목에서 Working Tariff Document를 선택한다
- Working Tariff Document 아래에 TARIFF 버튼을 클릭한다.
- 좌측의 사이드 메뉴에 Working Tariff Document를 클릭하면 HS-CODE 분류체계에 따른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 상위분류코드 2자리 기준으로 pdf 파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하위 HS-CODE로 매칭 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 직접 접속 링크는 아래와 같으나 이는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의 메뉴 구조를 참조하여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vt.nz/business/tariffs/working-tariff-document/working-tariff-document/>

○ 관세율 조회 시 참고사항

- 관세율 조회를 위해서는 뉴질랜드로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HS-CODE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 까지 사용할 수 있다.

-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이다.

-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관세율 조회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위의 국제 공통에 대한 HS코드를 확인한 후 위의 뉴질랜드 관세청 사이트 관세율 확인 방법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제형의 정보와 일치하는 HS코드를 찾아야 한다.

- 이 작업은 나라별로 운영하는 코드가 상이하므로 가능한 뉴질랜드 현지 물류 및 통관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해당 pdf 파일에서 특혜관세 표기는 AAN, AU, CA, CN, CPT, HK, LLDC, TH, TPA 등의 기호가 사용된다.

- 이는 각각 호-뉴-아세안 특혜세율, 호주 및 캐나다 특혜세율, 중국 특혜세율, CPTPP 특혜세율, 태국 특혜세율, 태평양 도서국 특혜세율을 의미한다.

- 특혜관세 국가 코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는 아래 관세청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https://www.customs.govt.nz/globalassets/documents/tariff-documents/the-working-tariff-document-introduction.pdf>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뉴질랜드는 기생충 및 질병으로부터 국민 경제의 주요 원천인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동식물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및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박멸 및 봉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 규제는 없으나 외국산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입 검역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과일 중 뉴질랜드 검역 기준(IHS: Import Health Standard)이 마련된 배(Pear)와 포도(Grape)는 수입이 허용되나 검역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과일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검사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입국신고서에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식품류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400뉴질랜드달러(약 USD 3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식물, 씨앗류, 식품류를 제외한 주요 수입 금지/제한품목은 한국과 비슷하다.

통관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관세청에 사전에 전자신고(Electronic Lodgement)를 해야한다. 관세청은 직접 수입통관을 위한 서비스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대신 아래 기관이나 사업자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통관신고 대행 서비스
 - 관세사(Customs broker)
 - 화물운송자(Freight forwarder)
 - TSW 전산시스템(www.tsw.govt.nz)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소프트웨어

2) 통관의 종류

-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 1,000뉴질랜드 달러 미만이면서 관세와 GST를 포함하여 60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품목에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 1,000뉴질랜드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 GST(2018년 7월 기준 15%)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 뉴질랜드에 들어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 허가통관(Permit Entry)
 -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때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 가수입계(Sight Entry)

-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EDI, Electronic Cargo Information)

- 뉴질랜드에서는 1,000뉴질랜드달러 이하이면서 관세 및 GST 합계가 60뉴질랜드달러 이하인 품목에 한해 전자 운송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운송 수단에 따른 부과 요금이 적용되며 항공의 경우 11.51뉴질랜드달러, 선편의 경우 28.83뉴질랜드달러가 부과된다.

3)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업자는 통관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세관 인터넷페이지(<https://www.customs.govt.nz>) 또는 EDI를 이용해 전자 문서로 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추가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 상업송장

-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서는 상세한 표기, 수량, 무게, 부피 등 해당 화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수입 통관서류 작성 시 기입사항은 뉴질랜드 세관이 발행하는 Fact Sheet 7 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통관 종류, 수입항의 이름, 운송수단, 상업송장 번호, 수입, 혹은 공급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 수입일자(일/월/년), 원산지, 물품의 정확한 가격의 상세한 표기, 물품 가격 외에 드는 비용(운송비용, 보험료, 포장비용 등) 등이다.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각 포장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FDA, EPA 등 관할에 따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 세관의 조사항목

- 세관에서는 CASPER라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수입품을 검사하는데, 평균 검사 비율은 7.5~10% 수준이다. 그러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통관 경비

-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라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산정 기준 가격은 세관 신고가격+관세+운송 및 보험료 포함 가격이다. GST는 통관일 기준 관세청 고시 환율을 적용해 총금액의 15%로 계산된다. 또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29.26뉴질랜드달러의 IETF(Import Entry Transaction Fee)라 불리는 수입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며, 여기에 농축수산물품의 경우 1차산업부 검역 통관비(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Biosecurity System Entry Levy) 19.98뉴질랜드달러가 추가된다.

○ 통관 절차 및 안내 문의

- 구체적인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여부나 통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통해 알 수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 절차상의 제약

뉴질랜드는 1996년 이래로 현대화된 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검역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사례나 통관 절차상의 규제를 비롯한 기술적 장벽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식물 수입에 관해서는 환경보호와 국민보건을 위해 검역과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일부 육류 등 동·식물 관련 제품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사전 수입허가 규정에 맞도록 엄격하게 관리 및 규제된다.

2) 환경 관련 규제

뉴질랜드는 야채와 가축 등 식품으로 소비되는 유전자변형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GMF, Genetically Modified Food)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수입, 실험 재배, 상업적 판매를 위해서는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의 실험과 시험 재배만 허용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2004년 2월부터 호주-뉴질랜드 식품공동 표준에 의해 옥수수, 카놀라, 섬유유, 대두, 감자, 사탕무의 경우 유전자변형 식품이 허가돼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상표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원료 중 일부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원료 표시 옆에 유전자변형성분이 포함됐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목(MDF 혹은 합판 제외)으로 만들어진 나무 제품 테이블, 의자, 소파, 우든팔렛 그리고 우든박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웅이 혹은 나무껍질 부분에 있을 수 있는 유충의 알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검역을 실시한다. 수출국에서 사전검역을 받지 않은 이상 반드시 메틸브로마이드 화학약품이 첨가된 소독처리를 받아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ION Cargo Solution

주소	PO box 201205, Auckland Airport 2150
전화번호	+64-9)254-4900
이메일	cargo@aioncargo.com
홈페이지	http://www.aioncargo.co.nz/
비고	교민업체

◦ GS Express

주소	10/61 View Road, Wairau Valley, Auckland 0627
전화번호	+64-9)444-7897
이메일	info.gsexpress@gmail.com
홈페이지	https://www.gsexpress.co.nz/
비고	교민업체

◦ EIF

주소	PO Box 97727, Manukau City, Manukau 2241
전화번호	+64-9)263-0222

이메일	lundj@eif.co.nz
홈페이지	http://www.eif.co.nz/

◦ Mainfreight

주소	2 Railway Lane, Otahuhu, Auckland
전화번호	+64-9)275-8136
이메일	auckland.enquiries@mainfreight.co.nz
홈페이지	https://www.mainfreight.com/nz/en/nz-home.aspx

◦ Tapper Transport

주소	373A Neilson Street, Onehunga, Auckland
전화번호	+64-9)634-4780
이메일	enquiries@tapper.co.nz
홈페이지	http://www.tapper.co.nz/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는 외국인 해외투자법을 기반으로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외국인'의 정의

-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 설립자가 뉴질랜드가 아닌 외국인 회사
- 회사 지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회사의 25% 이상의 수혜자가 외국인투자자로 구성된 합작회사, 합작 투자, 신탁 등
- 또한 투자규제는 외국인 투자가의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되며 '관계자'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공동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모두 관계자로 간주된다.

아울러 해외투자가는 현지의 법률전문가와 토지 관련 어드바이저를 통해 변경된 법률이나 규제 등에 정확한 자문을 구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투자는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해 외국인투자위원회(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가 개별투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외투자법의 세부 내용은 국토정보관리청의 외국인투자가이드(<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를 통해서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 투자허가에 필요한 절차

-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로 재무장관과 토지정보관리장관이 결정하게 되며 투자자의 신청내용의 복잡도에 따라 결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OIO)에 위임될 수도 있다.
- 외국인 투자자 법이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의 요건으로는 해당 사업 및 투자에 필요한 사업 경험과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과등의 이유로 이민법에 따라 뉴질랜드 비자 또는 입국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좋은 인품과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매도인과 외국인 매수(투자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어 중요 사업 자산 또는 민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이익을 법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투자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한다.
-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에 대한 허가 신청정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안내 사이트(<https://www.linz.govt.nz/overseas-investment/applying-for-consent-purchase-new-zealand-assets>)에 게시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검토는 50~70 근무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이 검토 기간은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기다리는 시간과 장관의 의사결정을 위해 소요된 시간을 제외한다.

투자인센티브

1) 내국인과 동일한 투자 및 사업환경 제공

뉴질랜드에 있어 해외로부터의 투자자와 자본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특별하게 뉴질랜드 사업자만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다.

◦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사업조건 제공

- 뉴질랜드는 투명한 투자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한 투자절차와 낮은 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 또한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흐름 면에서도 뉴질랜드 내외부의 특별한 규제가 없다.

- 다만 토지 및 환경분야 등의 일부 민감한 투자부문과 와이탕이 조약에 의해 원주민(마오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적이거나 금지되어 있다.

2) 뉴질랜드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뉴질랜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새롭게 뉴질랜드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지역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한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Employment)는 투자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내외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 지역 비즈니스 센터는 뉴질랜드 전역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투자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투자 초기 직면할 수 있는 이슈들의 해결을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제품 마케팅 및 판매 유통경로 확보 등 실행력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 뉴질랜드에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진출 지역의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무료 또는 저비용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R&D 분야 세금 인센티브 제도

- 뉴질랜드 정부는 2028년도까지 각 기업의 연구개발분야(R&D)에 대한 투자와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기 위해 R&D Tax Incentive(세액공제 인센티브) 제도를 2019/2020 회계연도 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비용지출을 높여 사회 전반에 신기술 개발과 사업육성의 혜택이 배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신청자격은 뉴질랜드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핵심연구활동을 수행하는자에 해당하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세금감면 대상은 연구개발 분야에 지출한 비용의 15%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보조활동(Supporting activity)비용도 전체 R&D 경비의 10%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 정부는 2020년 3월 기준 RDTI(R&D Tax Intensive)의 확정된 규정을 발표하며 신청자격과 환급 한도 제한 등에 있어 완화된 내용을 발표함. 아울러 공식 웹사이트(<https://www.rdti.govt.nz/index.html>)를 개설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 따른 세금환급을 지원하고 있음.

◦ 혁신사업분야 사전육성자금 지원(Pre-incubation loan)

- 뉴질랜드는 특히 정보통신(ICT)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테크놀로지등의 혁신기술분야 투자와 신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캘러헌 이노베이션 (Callaghan Innovation) 센터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이들 분야 투자기업 또는 창업자에게 심사를 통해 사전육성 자금(Pre-incubation Loan)과 같은 보조금 지원하여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환경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캘러헌 이노베이션은 2020년 6월 캘러헌 신규 연구개발 융자제도(R&D Loan)시행을 통해 최대 40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연구개발 자금

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제한 및 금지(업종)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인 사업 투자(Business Investment)와 토지 투자(Land Investment)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각 규정을 달리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원관리법 등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으며 이 때문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에 대해서는 Overseas Investment Act 2005에 의거, 외국인투자위원회(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OIO는 1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일반 사업과 자국보호 산업인 어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허가 및 감독하고 있다. 특히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감 토지(Sensitive Land)인 해안 인접 토지와 호수, 도서, 농업용 토지 등이 해당하며, 수산 어획 쿼터 매입 등 민감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중요 사업 자산 투자제한

-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또는 그의 관계자들은 뉴질랜드 중요 자산투자에 앞서 반드시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뉴질랜드 법인 A의 총 지분의 25% 이상을 취득하게 되는데 A의 총자산의 가치가 1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게 될 시 허가가 필요하다. (사안별로 법률전문가의 가이드 필요)

- 호주 투자자들에게는 매년 투자의 한도치를 늘리는 형태로 좀 더 관대한 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

○ 민감 토지에 대한 투자

- 다음과 같은 토지는 규제가 적용되는 민감 토지에 해당되며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 총면적 5ha 초과하는 비도시권 토지 (농업용 토지나 사용 목적이 상업, 산업, 주거가 아닌 토지)

- 토지 총면적 4,000㎡를 초과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름이 없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면적이 4,000㎡를 초과하고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 공공위탁 목적의 경우 또는 문화유산이나 역사 보존 지역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인접 토지의 총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 주거용 주택인 경우 외국인들(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 제외)은 주택구매 금지

○ 외국인의 주택구입 금지 (2018년 8월 15일 법안 통과)

- 2018년 8월 15일 외국인 비거주 투자자들의 주택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감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농장 등을 구입할 때는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승인되지 않음)

-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아파트는 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 해외 거주자 및 기업, 기관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국세청의 납세번호(IRD Number)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세금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며, 해당 계좌는 뉴질랜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계좌 소유자의 신원 확인이 돼야 한다. 이는 최근 뉴질랜드 부동산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 민감토지나 자산을 외국인투자위원회(OIO)의 사전 승인 없이 구매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있는바, 현지 투자자들의 자산 매입 시 전문가와 정부기관을 통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착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는 1차산업인 농축산, 임업 등이 국가 전반에 걸쳐 발달한 국가로 특정지역에 한해 별도의 관세 혜택 등 다른 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는 없다. 그러나 남섬 대지진 이후 정부주도의 도시복구계획에 따라 US\$ 270억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인 캔터베리 지역의 경우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산업의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끊임 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캔터베리지역의 대표적인 상업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는 남섬 최대의 경제권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지역이다. 남섬의 관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두 개의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남섬의 국제물류 허브로 불린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시는 대규모 복구사업을 통해 도로, 빌딩등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섬의 오클랜드시 대비 저렴한 임대비용과 새롭게 정비된 쾌적한 주거환경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들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캔터베리지역 평원지대를 끼고 있어 낙농, 축산 및 농업이 발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혁신의 허브로, 링컨대학과 같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농업 관련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지방정부 주도의 투자유치 지원 등에 힘입어 혁신기술분야, 농업 및 관광분야에 많은 기업이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 혁신생태(Innovation Ecosystem)

위치	Christchurch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기관 : ChristchurchNZ ◦ 웹사이트 : https://www.cdc.org.nz/ ◦ 주소 :BNZ Centre Level 3 101 Cashel Street Christchurch New Zealand ◦ 이메일 :enquiries@christchurchnz.com ◦ 전화 : +64 3 379 5575
비고	◦ 전반적인 투자환경 (2020년 11월 확인 최신자료) - 크라이스트처치시는 핵심 투자분야 (Key Investment Sectors)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사업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 유망 투자영역으로는 기술(Technology), 농업(Agribusiness), 관광(Tourism) 분야로 많은 해외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 혁신기술분야(Technology Sector) 산업 - 뉴질랜드의 다른 지역경제는 1차산업 의존도가 높지만, 크라이스트처치는 하이테크 제조(High-tech Manufacturing), 소프트웨어개발(Software Development) 및 의료분야 혁신기술개발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달 했다. - 디지털단파방송(DMR: Digital Mobile Radio)장비 생산에 있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타이트 통신(Tait Communication)과 모터동력 컨트롤분야에 있어 글로벌 한 경쟁력을 보유한 오컴(AuCom), 회계, 교육, 에너지,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제이드(Jade Corporation)등이 크라이스트처치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기술기반 혁신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 또한 이러한 혁신분야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뉴질랜드 생산자 수출협회(NZMEA: New Zealand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캔터베리 기술협회 (CTC: Canterbury Tech Cluster), 크라이스트처치 혁신센터 (Christchurch Innovation Precinct) 등의 지원체제도 투자기업들에 유리한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나스닥에 상장된 위치정보기반 통합솔루션 기업인 트림블 (Trimble Navigation LTD. 미국 캘리포니아)은 크라이스트처치에 투자한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으로 토목공학, 무선통신, 광학 계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료원 : 크라이스트처치 비즈니스 지원센터(ChristchurchNZ)제공>

주요 지역별 여건

○ 오클랜드 지역(Auckland Region)

뉴질랜드 최대 상업도시 도시인 오클랜드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체 500만의 인구 중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약 80만 명이 증가하여 24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질랜드 최대 상업 중심지답게 국가 전체 GDP의 40%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민자가 폭넓은 취업 및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는 오클랜드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도매 판매업의 48%, 교통·통신사업의 46%, 금융·보험·비즈니스 산업의 44%가 오클랜드에 자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입출항의 주관문으로 국제공항과 항구는 규모와 인구 및 물동량 면에서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노스랜드, 왕가레이, 해밀턴 그리고 타우랑가 등을 연결하는 운송로가 교차하는 물류 허브 도시이며 각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공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상, 철도, 육로 모두 많은 화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주요 경제활동 장소인 오클랜드는 아시아인의 비중이 21.6%로 나머지 지역의 5.5%에 비해 16.1%나 높다. 세계 100위권의 오클랜드 대학 및 다수의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산업 역시 크게 발달했다. 또한, 저금리와 인구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주택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정부주도의 인프라투자가 꾸준히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교통망 확충과 관련한 건설 부문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DATACOM, VODAFONE NZ, SPARK 등의 대형 IT 기업들이 위치해 있으며, 핀테크, 전자결제 등 다양한 IT 솔루션 개발기술을 보유한 중견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많아, 특히 IT 분야 신기술 개발과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IT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뉴질랜드 최대의 경제도시답게 해외로부터의 많은 이민자가 선호하는 도시이며 비교적 첨단기술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 관련된 인력 수급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 와이카토 지역(Waikato Region)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낙농, 목축업의 중심지로서 목장 및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해 세계 최대의 낙농 유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폰테라의 유가공 공장 등이 있다. 폰테라는 세계 유가공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와이카토 지역은 낙농업의 중심지로 푸른 목초지와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해밀턴을 중심으로 갤러허(Gallagher)와 같은 어그테크(Agritech)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매년 열리는 남반구 최대의 농업박람회인 필데이즈(Fieldays) 개최를 통해 여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팜 분야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실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형 농장과 경작지들이 많으므로 농업기술분야 투자진출이나 현지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사업화 등에 유리한 지역이다.

○ 웰링턴 지역(Wellington Region)

행정 수도인 웰링턴시가 위치해 있으며 시를 중심으로 관광 및 와인산업이 발달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 스튜디오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영화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뉴질랜드 영화산업은 크게 영상제작(촬영, 후반작업)과 방송 및 영화유통으로 분류되는데 웨타 스튜디오는 촬영과 후반작업에 관련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혹성탈출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작업을 담당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웨타디지털은 ILM과 함께 할리우드 영화의 시각효과 부문 최고의 스튜디오로 평가 받고 있어, 영화제작과 CG분야의 기술협력에 있어 진출 시 유리한 지역이다.

○ 캔터베리 지역(Canterbury Region)

2011년 2월 지진이 발생했던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중심도시이며 양을 중심으로 한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인근에 퀸즈타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위치해 관광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해 있다. 2014년에 시작된 400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지진재건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인구와 자금의 급격한 유입이 되었으며 지진 재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시를 중심으로 혁신산업분야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혁신기술 분야를 비롯해 농업분야 및 관광분야와 관련한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재건사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가 재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이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을 고려하면 성장잠재력 면에서 기대되는 지역이다. 지역 비즈니스파트너(Regional Business Partner)인 크라이스트 처치 엔젳(Christchurch NZ)을 통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확인할 수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309.82	2,844.6	2,428.84	1,945.68	5,426.65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57.73	195.88	226.82	425.04	-183.15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3	8	10,194	15	8,916
2019	11	5	3,475	11	2,929
2020	2	0	318	2	34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0	3,724	3	2,879
건설업	1	1	671	2	350
도매 및 소매업	3	2	4,756	3	4,759
정보통신업	1	1	277	1	270
금융 및 보험업	1	1	0	1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7	1	7
교육 서비스업	2	1	433	2	4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326	2	21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건설업	7	1	2,363	7	2,153

도매 및 소매업	1	1	19	1	19
숙박 및 음식점업	2	2	712	2	694
교육 서비스업	1	1	381	1	6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건설업	1	0	257	1	256
정보통신업	1	0	61	0	0
교육 서비스업	0	0	0	1	9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o Korean Air Regional Office, Auckland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주)대한항공

o Ottogi New Zealand Ltd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축육, 가공식품
모기업명	(주)오뚜기

o San Won Ltd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수산물 저장
모기업명	(주)동원수산

◦ Kookmin Bank Auckland Branch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금융 전반
모기업명	국민은행

◦ Hansol New Zealand Ltd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원목
모기업명	(주)한솔홈데코

◦ Jaico Ltd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지사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수산업
모기업명	(주)주암산업

◦ Kia Motors New Zealand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td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 Electronics New Zealand Branch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Hyundai Rotem Company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도차량
모기업명	현대로템

◦ SCENZ Ltd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농림, 수산, 임업
취급분야	원목
모기업명	선창산업

◦ 오스템 뉴질랜드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유통
취급분야	임플란트 등 치과용 기기

모기업명	오스템임플란트
------	---------

○ 제일기획 뉴질랜드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법인
업종	광고 마케팅
취급분야	광고 서비스
모기업명	제일기획

〈자료원 : KOTRA 오uckland무역관 자체조사〉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뉴질랜드는 영 연방 법률의 영향을 받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한 기업 지배구조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 설립 시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투자가 또는 소유주의 유한책임, 사업의 규모와 성격, 뉴질랜드 국민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필요성, 세금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 해외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법인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자회사 성격의 법인 (Subsidiary) 설립
 - 지사(Branch)를 설립하여 해외기업 으로 등록
 - 기존 뉴질랜드 회사의 인수를 통한 외국기업의 자회사화

뉴질랜드의 자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 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 법인등기소를 통한 법인등록 절차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정하고 법인등기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 뉴질랜드에서 설립하는 자회사는 최소 1인의 주주와 이사가 있어야 하고 문서 등의 수발을 위한 뉴질랜드 역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
 - 해당 법인은 해외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회사로 모회사의 주주와도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현지 뉴질랜드에 설립된 회사의 주주는 무한 책임 회사로 특별히 설립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 법인등기소 신청 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명, 이사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별 보유비율 회사연락처를 준비 제출하면 온라인 기준 접수 후 2~3일 내에 예비 등록증을 수령 하게 된다.

- 납세자 등록 및 은행계좌 개설 절차
 -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IRD)에 사업자 납세등록을 진행한다. 이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별도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번호 등록을 완료 후 은행 구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회사등록증 사본과 위의 사업자 납세번호, 이사 신분증들 지참 시 대부분 당일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이민성과의 파견인력 관련 비자처리
 - 법인 설립 후 해외본사로 부터 파견될 인력계획을 준비 이민성에 주재원들에 대한 워크비자 신청을 준비한다.
 - 통상 이민성은 외국 투자기업의 주재원파견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뉴질랜드 현지인력의 고용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비자심사가 진행된다.
 - 이때 파견인력 최대한도 승인 (Approval In Principal, AIP)에 근거에 해외인력의 파견 시마다 개별적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법인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 외국 기업은 FRA 2013에 따라 연간신고서 외에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 그러나, 2015년 2월에 개정된 FRA 20에 의해 자산 2천만 뉴질랜드달러, 연 매출 1천만 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외국 기업은 재무 보고

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됐다.

지사

지사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회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외국기업의 회사명, 법인등록 국가, 이사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 그리고 뉴질랜드내의 사업장 주소와 문서의 수령과 제출을 담당할 최소 1인의 뉴질랜드 거주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물리적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등록 신청 시 외국기업의 정관도 함께 제출한다.)

자회사와 달리 지사는 해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며 또한 뉴질랜드 이사가 해외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없다.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보 수집이나 연락 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해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Company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imited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회사명
- 주식(1주 이상)
- 1인 이상의 주주
-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

주식회사는 법인 즉 회사의 주주와는 별개의 존재이다. 회사 설립은 회사의 이름을 등록해서 새로운 IRD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New Zealand Companies Office에서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회사의 경우 주주의 유한책임, 즉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금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경우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보다 많은 책임과 서류작업이 요구된다. IRD뿐만 아니라 the Companies Office와도 매년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 모든 뉴질랜드 회사의 이사(Director) 중 최소 한 명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거주하고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의 이사(Director)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인 Partnership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한책임, 무한책임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Sole-Trader로 뉴질랜드 IRD에 등록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 번호(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세금 및 채무에 책임을 지게 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KPMG 회계법인

전화번호	64-9)367 5800
주소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010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nz/en/home.html
이메일	lisakim@kpmg.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 담당자 근무 중
비고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 Deloitte 회계법인

전화번호	64-9)303 0700
주소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nz/en.html
이메일	brelee@deloitte.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 담당자 근무 중

◦ Kenton Chambers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58-1900
주소	Level 8, 300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www.kentonlaw.co.nz/

이메일	ken@kentonlaw.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대표변호사 근무 중
비고	한국계 법무법인으로 해외투자, 노무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오용근

◦ Chapman Tripp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57-9000
주소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홈페이지	http://www.chapmantripp.com/
이메일	info@chapmantrip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367-8000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www.russellmcveagh.com/
이메일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 Bell Gully 법무법인

전화번호	64-9)916-8800
주소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홈페이지	https://www.bellgully.com/
이메일	info@bellgull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변호사 없음

◦ Chatfield&Co

전화번호	64-9)303-2200
주소	Level 7, 57 Symonds Street,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chatfield.co.nz
이메일	office@chatfield.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근무 중
--------------	--------------

〈자료원 : 회계/법무법인 홈페이지〉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뉴질랜드 내의 투자법인이 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20여 일의 사업철회 고지 및 검토 기간이 걸리지만, 해외 투자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철회 고지에서 신청서 작성까지만 최소한 3달이 넘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회사에 부채가 있거나, 법인 철회 신청 후에도 계속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철수를 하고자 할 때는 수달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회사를 청산하고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해외 투자 법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청산, 혹은 철수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주간신문 New Zealand Gazette나 주요 지역신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 광고해서 뉴질랜드 시민에게 회사를 철수함을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광고가 나간 석 달 후 뉴질랜드 경제 혁신 고용부가 지정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뉴질랜드 법인 등기부에서 회사 정보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업혁신고용부 산하 기업등기소(Companies Office)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면 등기부에서 회사 기록이 삭제되면서 철수 절차가 끝나며, 회사를 철수기로 한 날짜 이전에 반드시 사업을 청산해야 한다.

3)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Companies Act 1993의 321절의 여섯 항목이 법인 철수와 연관된다. 이 법령에서는 회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산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의 창립자 혹은 투자자는 법인 등기부에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삭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4) 회사의 채무상환의무 분쟁에 따른 청산

만약 회사가 채무상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의 청산은 회사로서의 모든 사업활동의 종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및 청산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지급 직원급여 및 휴가보상비와 외부채무 순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법인청산절차(Liquidation Procedure)와 관련한 상세정보

<https://companies-register.companiesoffice.govt.nz/help-centre/when-your-company-fails/what-happens-during-liquidation/#>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54뉴질랜드 달러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697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541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2.27
비고	2020년 최저임금이 4월1일 부터 상향 조정되었다.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뉴질랜드는 근로자가 갖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을 통해 고용 중에 부당해고나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법은 뉴질랜드에서 노동 및 고용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보다 고용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계약법은 고용관계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고용주,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간 업무에 적용된다. 피고용인은 누구나 서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계약은 개별계약이거나 단체계약(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형태를 취한다. 고용계약에는 법이 정한 일정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이 각자 서명한 후, 서명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 이때 고용계약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포함할 수 있지만 엄격히 규제된다. 수습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기간이며 그 내용을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기술하고 근로자가 서명해야 한다. 만일 수습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는 고용분쟁이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한편, 고용계약법은 고용계약서의 서면작성 원칙과 고용주가 서명된(또는 서명할 의도의) 고용계약서나 현재 유효한 고용조건을 담은 문서를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이나 4,000뉴질랜드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었으며, 고용관계법을 어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 1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 법인에 대해 2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11B조)에서 규정한 정규 근무는 주당 40시간 근무이며,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는 시간 외 근무(overtime)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 외 근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고용인에게는 시간 외 근무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시간 외 수당 근무 거부를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고용주의 호출 시에만 근무하는 노동계약으로 최소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zero-hour contracts'가 금지됨에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근무 시작시간, 종료시간, 주당 근무 가능 시간 등의 내용이 일부 혹은 전체가 포함돼야 하며, 근무시간을 상호 합의했어도 고용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주는 타당한 이유나 정확한 보상 없이 피고용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간 외 수당은 시간 외 근무 처음 3시간은 통상 임금의 1.5배, 그 이후부터는 2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시간 외 수당 계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통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간 외 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시간 외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중재(mediation) 서비스(전화 0800-209-020)를 이용할 수 있다.

휴가

뉴질랜드 휴가법(Holidays Act 2003)은 병가, 위로휴가, 연간 4주의 정기 휴가와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1년에 4주이다. 근무 6개월 후부터 피고용인은 5일간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다. 그 후부터는 매 12개월에 5일씩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는 피고용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피고용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병가에 대해서 해당 일급 또는 평균일급을 지불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 등 질병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고 연차사용 후 남은 기간만큼 국세청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혁신고용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mbie.govt.nz) 또한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50조)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평일(월~금)인데 그 날 근무를 한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할 경우 하루 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피고용인이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 하루 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유급 육아휴직 및 고용보호법(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은 최대 52주간의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18주까지 유급휴가를 포함한다. 뉴질랜드 유급 육아휴직제도는 고용주가 아닌 국세청으로부터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주당 최대 516.85뉴질랜드달러까지 보조를 받는 방식이다.

해고

Equal Pay Act 1972는 성별, 인종별, 국가별, 종교별, 임금 차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을 책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 해고 조건은 고용 계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3번 이상 경고한 후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해야 하며, 대개 4주 전에 해고 사실을 피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정당한 정리해고(Redundancy)는 고용관계 종료의 합리적 사유가 되며 근로자의 업무가 기업에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해고에는 적법한 사업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성이나 부적합한 행위, 부당행위 등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매각이나 소유권 이전과정에서도 정리해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주체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할 의도로 회사를 매입했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고용주가 변경되어 근로자는 해고상태가 된다. 이때 매각된 회사의 근로자는 기술적 실업상태로 매수자가 고용결정권을 갖게 된다.

또한, 90일 수습 기간(90-day trial) 제도에 따라 고용주가 최고 90일까지의 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수습 기간에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만약 수습 기간 외에 고용주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퇴직 시에는 따로 명시된 퇴직급여는 없으나, 일하면서 누적된 휴가비(Holiday pay)를 퇴직 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휴가비는 1년에 4주의 휴가를 쓰는 것에 비례해서 책정된다.

노사협의회

기업혁신고용부는 'Employment Relation Act 2000'에 의거 고용관계를 법령화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이 만료됐을 때, 그리고 양측이 최소 4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한 후에만 합

법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고용주는 협약 만료 40일 전부터 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뉴질랜드는 무상 공공의료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정부차원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

뉴질랜드는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등과 관련된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 실업 수당(Job Seeker Support)은 자녀, 결혼 여부에 따라 주당 최대 635뉴질랜드 달러가 지원된다.

산재보험

뉴질랜드는 별도의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 시 사고보험공사(ACC)를 통해 재활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 지원 및 치료 기간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급여 손실분의 80%까지 보전해준다.

국민연금

뉴질랜드에서 일정 거주 기간을 만족하면 Superannuation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지급되는 연금액은 주당 최대 463.04뉴질랜드 달러이다. 연금액은 65세부터 지급되며 결혼 여부, 세금 코드 등에 따라 일부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Kiwi Saver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의 3~8%를 적립하여 향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이다. 개인 적립금과 함께 정부 지원금, 고용주 지원금이 적립금으로 투입되어 운용되며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투자상품 제시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2011년 4월에 28%로 하향 조정되어 균일 세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되며 반대로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며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급여와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에는 별개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개별 소득자에게 가족 소득 단위로 제공된다. 가족 세액 공제 기준은 만 13세 이하 자녀 1인 연 74,000뉴질랜드 달러, 자녀 2인 연 90,500뉴질랜드 달러, 자녀 3인 연 105,500뉴질랜드 달러, 자녀 4명 이상 연 120,500뉴질랜드 달러이다.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해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200뉴질랜드 달러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1만 5,000뉴질랜드 달러를 넘기는 금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2010년 10월부터 연소득 1만 4,000뉴질랜드 달러까지 10.5%, 4만 8,000뉴질랜드 달러까지 17.5%, 7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30%,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3%를 부과하는 누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모든 국가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이고 이 협정이 체결된 대부분의 국가 거주자의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소비활동에는 부가가치세(GST)라고 불리는 간접세가 포함된다. 2019년 기준 세율은 15%이고 구매 종류 및 가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그들이 지불한 GST를 회계 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

자동차 연료(휘발유, 디젤 등), 담배, 주류의 경우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GST)에 특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는 리터당 NZ\$ 0.77294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이는 도로교통기금, 자동차사고기금, 지역연료세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경유는 NZ\$ 0.094가 부과된다.

- 담배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10% 인상되어 2020년 기준 25개비 한 갑의 평균 가격은 NZ\$ 41이다.

- 알코올은 그 농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정부기관의 사이트 내용을 참조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류세금 안내 링크]

<http://www.ahw.org.nz/Portals/5/Resources/Fact%20Sheet/Info%20Sheet%20Alcohol%20and%20Tax%20Final%2009.pdf>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뉴질랜드에서의 외환거래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1984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외환규제가 폐지되었고 1985년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후 외환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바스켓 방식의 완전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이 심해 2004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일정 수준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자유무역 원칙에 의거 뉴질랜드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따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나 외화수입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관광이나 상품수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뉴질랜드 관광청(Tourism New Zealand) 또는 뉴질랜드무역협회(New Zealand Trade Enterprise)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환거래는 시중은행인 ANZ, ASB, Bank of New Zealand, Kiwibank, Westpac 등 상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환거래 외에도 신용장, 환어음, 상업어음, 중장기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환 규제

뉴질랜드는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외환 관리상의 제약이나 국내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은 없으며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ML, FATCA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규제가 거의 없는 외환거래제도 때문에 자본 및 이윤의 이전 등에서 자유로우므로 등록된 은행을 통해 대부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UN 제재 및 뉴질랜드 재정거래 보고규정 또는 테러방지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기준 적용). 또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배당을 제약 없이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수 있으며 금융 이익이나 이익의 자본전입을 포함하여 외국자본을 승인 없이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 등으로 나뉘며 그 밖에 와인 등 지리적 표시 등록법이 시행되고 있다. 각 특허법(Patents Act 1953), 디자인법(Design Act 1953),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뉴질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법은 영국법과 관습법을 토대로 하며, 최근 디지털 및 전자기술 동향에 따라 저작권법, 특허법 등에 대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뉴질랜드는 호주와 특허출원절차 통합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오고 있었으나, 2018년경 뉴질랜드 정부가 비용 및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뉴질랜드에서 특허는 최초출원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발명으로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뉴질랜드에는 실용신안 관련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품의 사용 또는 기능 외에 시각적 특징을 보유해야 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마다 2회 갱신하여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상표는 등록할 수 없는 절대적, 상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될 수 있다.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뉴질랜드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510만 명(통계청 예상치)이며 2000년 3월 기록된 385만 명 대비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실질적인 소비인구로 볼 수 있는 총 소득자 수는 388만 명으로 통계청에 의해 집계되었고 이중 주 소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20대에서 50대가 197만 명으로 나타나고 15세부터 20세가 31만 명, 50대부터 65세가 90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이 약 70만 명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자료(2020년 11월 기준 최신자료)에 따르면 보면 소득자의 평균 소득액은 주급을 기준으로 652 뉴질랜드달러(이하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소득은 남성이 1,187달러를 기록하여 945달러인 여성대비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2019년 기준 40,942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나, 최고 33%에 이르는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고 현지 공산품 물가가 높아 실질적인 소비인구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정부 차원에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정 당 수입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소비가 가능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소비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통계청의 2013년 인구센서스 당시 11.8%였던 아시아 인구는 2018년 인구센서스(2020 현재 가장 최근) 결과 1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러피언이 74%에서 70.2%로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성장세를 보였다 할 수 있다. 이런 아시아 인구의 증가는 비교적 비슷한 문화권인 우리나라 식품 및 소비재의 시장확대에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자료원 : 뉴질랜드 통계청〉

소비 성향

1) 감소하고 보수적인 소비성향

한국에서 도심 한가운대를 걷다 보면 명품가방을 멘 사람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출근길에 명품 가방을 멘 사람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뉴질랜드인들은 감소하고 보수적인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어 유행을 타는 제품이나 명품과 같은 고가품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실용성에 바탕을 둔 적절한 가격과 품질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는 인구구성비로 볼 때 70%가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유럽인인 관계로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던 그들의 소비 패턴이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제품선택에서 글로벌 하게 이미 검증된 브랜드와 기존에 사용 중인 제품에 높은 충성도를 보이기 때문에 현지시장진입에서,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낮은 회사의 제품이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보수적인 성향의 소비 트렌드는 실수요층의 경우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를 상대로 한 제품 공급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해 보이지 않는 이상 기존 제품을 대체하며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다.

반면에 한번 신뢰도를 갖게 된다면 반대로 지속적인 재구매가 가능한 소비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며, 현지의 규제와 관련한 이슈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로컬 업체와

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입이 보수적인 소비시장을 뚫고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 유행에 한 박자 느린 반응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상대적으로 트렌드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나라이다. 그래서 일부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했거나 진행 중인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시에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POP이라는 트렌디한 아이콘이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해 남미의 브라질까지 휩쓸었음에도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그 정도의 열풍이 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경험했던 수준의 한류 마케팅 효과를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새로운 국가에 진출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시장조사와 현지인들의 소비성향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차가운 반응에 당황할 수도 있다.

3) 특수한 세일시즌과 온라인 구매를 적극 활용

현지 소비자들은 노트북, TV, 핸드폰의 가전제품과 가구와 같은 중고가 제품의 교체에서 즉흥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기도는 크리스마스, 마더스데이, 부활절과 같은 특수 세일 시즌을 최대한 활용해 싸게 구입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속도의 향상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직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가 쇼루밍의 소비형태를 보이며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격비교 앱 등을 활용 꼼꼼하게 최저가 가격을 검색한 후에 슈퍼마켓이나 유통매장에서 계획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해외 직구 주문 역시 이러한 가격비교 경쟁에서 중요한 구매처로 자리 잡고 있다.

다소 특이한 현상일 수 있으나, 제품의 품질면에서 큰 기대가 없고 빈번한 제품 교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아주 싼 값에 제품구매가 가능한 중국 직구가 많이 늘고 있으며 이 경우 배송에서 최소 3주~4주 이상이 걸리더라도 저가 제품에 대한 가격 만족도가 이를 상쇄시키며 꾸준히 소비가 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로 대표되는 한국의 제조업은 높은 기술경쟁력과 세계 시장점유율을 통해 뉴질랜드에서도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덕분에 해당 산업과 연관된 부문의 제품 역시 우수한 품질로 현지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최초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힘입어 정보통신분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력을 지탱하는 한국의 IT 기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인식되고 있다. 뉴질랜드 기간통신 사업자인 스파크(Spark)는 2020년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장비 공급업자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선정하였다.

조선업은 한국의 선박제조 기술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로, 과거 보급함인 에덴버함을 한국에서 건조한 이래 2020년 뉴질랜드 최대의 군수지원함인 아오테아로아함 까지 우리 기업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도 했다. 아울러 전자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고급형 TV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대형 전자제품 양판점에서는 한국 스마트폰과 TV 냉장고 등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 및 소비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시아계 이민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대형슈퍼마켓에서도 한국 김, 라면, 만두를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등 소비재 제품에서도 뉴질랜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기존 거래선을 바꿈으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를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 거래선과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거래선을 바꾸게 되더라도 뉴질랜드나 호주에서의 평판을 먼저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Sample, 가격, 품질 보증 등 까다로운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하나 원칙에서 어긋날 정도는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많은 한국 업체들은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이 중요하다. 일례로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한 경우 이메일이나 단순 레터보다는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송부하는 한편, 잘 다듬어진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과 회사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바이어들은 회사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화된 영문 홈페이지 구축은 뉴질랜드 진출을 위해 필수이다.

상담 시 뉴질랜드가 소량 다품종 시장임을 감안해 최소 주문량 및 바이어 요청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상담 이후 바이어의 문의사항은 회신기한을 준수해 답하고, 바이어와의 상담 시 약속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행해 거래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Wood Packing 또는 Pallet을 사용할 때 수출 전 사용 목재에 대한 방역 검사가 필수조건이므로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소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선편이 주 1회 있으므로 선적 일정 작성 시 고려해야 한다. 유럽과 거래 중인 업체는 기존 거래선을 변경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품질, 납기 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조사 시 소매가격이 높은 것은 유통기간이 길고 마진율이 높으므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 제품의 소매가격은 수입 가격의 대략 4배 수준임을 기억해두면 좋다.

2) 대금 결제방식

일반적인 수입 절차 및 관행이 서구사회와 비슷하며, 대금 결제방식은 비용 절감을 위해 L/C보다는 T/T를 선호한다. T/T 결제는 소액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수출 업체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겠다는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는 수입상도 있다.

샘플 주문, 테스트 오더 등의 경우 최근 KOTRA의 소액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KOPS(Kotra Online Payment System, kops.buykorea.org)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3) 거래 시 유의사항

뉴질랜드의 상거래 관행과 호주의 상거래 관행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을 호주 시장과 묶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뉴질랜드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별도의 시장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으로 현지 업체와 직거래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뉴질랜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8~9명 수준이다. 대부분 기업은 가족 단위의 Family Business로 운영된다. 직원별 담당 업무가 정해

지면 타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메일 교신 등 업무 연락 시에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에는 업무가 마비된다. 이때 회신 지연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A/S나 클레임 해결 등 한국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현지에서 제기되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이는 소량 주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나, 신뢰도 저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으로 A/S나 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해 신뢰도가 높아지면 거래 물량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이메일 및 유선 커뮤니케이션

서구문화권에서 생각하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이다. 이는 생소할 것도 없는 사실이고 이곳 뉴질랜드인들 역시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요청 후 신속한 응대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이다.

또한, 상대방 기업 내부의 담당자와의 접촉을 위해서도 해당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셉셔니스트 등을 거쳐 담당자와의 접촉 목적을 알리고 해당 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통해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이러한 프로세스 없이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담당자 정보를 요구한다든가 해당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급하게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무례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 관계상 최초 접촉 시에는 이메일 접촉을 통해 사전에 바이어가 접촉에 대한 기본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정보와 최소한의 시간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후 유선접촉을 통해 최종 대면 접촉의 기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기업문화

뉴질랜드 바이어의 경우 아침 일찍 근무를 시작해 오후 3~4시경 끝내고 남은 오후 시간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고, 휴가 기간이나 휴일을 방해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사기업은 성탄절과 신정연휴를 전후로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휴업을 한다. 따라서 12월과 1월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기간에는 출장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현지 방문대상 업체와 미리 조율해두는 것이 좋다.

럭비가 유명하므로 럭비를 주제로 한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며, 럭비 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의 접대문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나 국영기업이 바이어일 경우 이들의 품위를 저해할 수 있는 로비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공식행사가 아니면 정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초대를 받았을 때는 공식 또는 비공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며, 친밀한 사이거나 현지인인 마오리족들이 아니고는 뺨에 키스하는 경우는 드물다. Mr, Mrs 등은 공식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First Name만 부른다.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관계로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초면에도 반갑게 대해 호감을 느끼게 한 후 사기 범죄나 강도를 하는 사례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선물

뉴질랜드는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모두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하에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도를 자랑한다. 따라서 업무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금물이며, 뇌물을 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첫 상담에서는 부담스러운 선물은 준비하지 않는 게 좋다.

보통 선물을 해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다. 선물하고 싶으면 친숙해진 이후나 안면이 트인 이후에 한국 전통문양의 책갈피, 한복 입은 인형, 태극부채와 같이 한국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제품, 혹은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영어 책자, 비디오테이프, 한국 노래 CD 등이 색다르면서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4) 약속

영국인의 국민성을 이어받아 보수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격이 느긋하고 친절하나 자존심이 강하다. 개인주의 의식이 생활화돼 있으며, 질서 의식이 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최소한 1~2주 전에 미리 잡아 상대방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엄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식사

서구인들은 가족 중심적 생활에 익숙하므로 퇴근 시간(주로 오후 5시) 이후나 주말에 약속을 잡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 평일 저녁 식사를 접대할 경우에도 당일 제안하는 것보다는 며칠 전에 초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식사주문 시 단품메뉴를 선호하는 한국과 달리 서구인들은 음료와 간단한 전채 그리고 메인식사와 디저트를 주문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6) 문화적 금기사항

영국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사회로 종교나 관습에 기초한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영국 등 서구사회의 기본적인 문화 예절과 상거래 관행이 통용되고 있어 상거래나 출장 시에 조심해야 할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뉴질랜드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민 사회이므로 잘 알지 못하는 바이어와 대화할 때는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미국식 발음에 익숙한 한국사람은 뉴질랜드식 영어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큰 실례이며, 상대방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의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관습은 없으나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대화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귀엽다고 여자아이의 얼굴이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오투기

㈜오투기는 청정 지역과 축산업으로 이름난 뉴질랜드의 장점을 활용, 생산제품에 사용 되는 식품 원자재를 가공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995년부터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였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30분 거리인 Takanini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 1997년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지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라면스프, 사골곰탕, 설령탕, 꼬리곰탕, 갈비탕, 육개장 등 제품에 사용하는 사골엑기스와 비프 엑기스를 제조하고 있으며, 3분류 등 오투기 제품에 뉴질랜드 쇠고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정지역인 뉴질랜드에는 18개월~30개월 연령의 어린 소만을 도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광우병 같은 질병발생이 일어나지 않아 안전한 식품 원재료를 생산 할 수 있으며, 오투기 뉴질랜드 공장에서는 소스, 마요네즈 등을 생산하여 현지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으며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나라 식품 제조기업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여 향후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2) 한솔 뉴질랜드

한솔 뉴질랜드는 조림사업과 관련한 뉴질랜드 진출 기업이다.

- 한국의 목재시장은 벌목 자체가 쉽지 않고, 벌목한 나무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뉴질랜드 원목종 라디에타 파인(Radiata Pine)종은 25년이 지나면 구조재나 건축용 자재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국에서의 조림투자 사업구조와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별도의 토지구매 없이 벌목권(Cutting Right)구매가 가능하다.

1996년 뉴질랜드에 첫 조림사업 투자 진출을 기획하고 진출한 이래 실제 조림지 형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15년 첫 벌목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벌목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안정적 벌목물량을 확보하고 벌목 후 외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현지 목재수출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한국 또는 주요 수요처인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마련하였다.

3) 메카 인더스트리

제조 산업이 취약한 뉴질랜드에서 자국산 변압기로 시장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는 ETEL사는 대부분의 변압기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었으며, 한국 또한 주요 공급처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던 품목들이 하나둘씩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이나 인도산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던 변압기 주요 부품인 냉각탱크에 심각한 불량 발생해 생산계획에 큰 차질을 빚으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됐다.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은 2015년 3월, 한-뉴 FTA 관련 설문조사 당시 접촉한 ETEL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했으며, 새로운 공급처를 물색 중이던 동사 구매담당자에게 해당 부품 공급이 가능한 한국기업의 추천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오클랜드 무역관은 지사화 사업으로 지원 중인 메카인더스트리사를 소개하고 업체 정보를 전달했다.

메카인더스트리사는 용접기 캐리어, 고가 수직사다리 등을 제조하는 씯메탈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호주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작지만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변압기 냉각 탱크 샘플 제작을 의뢰받을 수 있었고, 6월에 5종의 샘플이 ETEL사에 전달됐다. ETEL사는 중국에서 문 제된 탱크 표면의 아연도금 품질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메카인더스트리사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됐다.

다만, 도면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전달 오류가 있어 1차 샘플이 합격을 받지 못해 2차 샘플을 다시 제작해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메카인더 스트리사는 오류 재발생 방지를 위해 8월, 해당사 대표 및 실무진이 직접 뉴질랜드를 방문해 오클랜드 무역관의 지원 하에 ETEL사와 세 부적인 기술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2월에 2차 샘플 5종의 제작을 완료했으나 품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단가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기존 견적보다 약 20% 높은 재견적을 제시했다. 최종 계약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무역관은 포기하지 않고 ETEL사에 높은 품질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하는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ETEL사는 당초보다 상승된 견적에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결국 20% 인상된 재견적 수용의사를 무역 관을 통해 메카인더스트리사에 전달하고 곧바로 1차 시험주문량을 발주했다.

시험주문량이 성공적으로 납품이 되면서 신뢰도가 제고됐고, ETEL 사에서 취급하는 다른 제품에 대한 오더가 이루어지는 등 탄탄한 비즈

니스 파트너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일 때마다 양쪽을 설득해가며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무역관의 도전과 완벽한 품질을 추구한 한국기업의 노력, 그리고 이들을 신뢰하고 인정해준 현지 바이어 간의 절묘한 하모니가 이뤄낸 결과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국의 저가 공세를 뚫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이 답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4) 경천 식품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은 2015년 한-뉴 FTA 타결에 맞춰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 김제품 수요가 높음을 확인했다. 이에 수출경험이 없으나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경천식품을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대상으로 선정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2015년 7월, 한국산 조미 김 수입을 희망하던 Ottogi NZ사는 KOTRA 오클랜드 무역관으로 통해 경천식품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바이코리아에 지시 인콰이어리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KOTRA 대전충청지원단과의 협업과 경천식품의 빠른 협조로 바이어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인 결제조건에서 양측이 견해차가 너무 커서 1차 협상이 중단됐다.

수출경험이 없던 경천식품은 기존 국내 거래 관행대로 선결제를 요구했지만, 바이어는 운송과정에서의 변질 여부를 우려해 컨테이너 하역 후 30일 이내 결제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무역관과 대전충청지원단은 경천식품과 Ottogi NZ를 설득해 컨테이너 도착 후 즉시 결제 조건이라는 절충안으로 합의하게 돼 2015년 11월, 4,729달러 상당의 시범 주문을 완료했다.

이미 다양한 브랜드의 한국 조미김 제품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천식품은 경쟁력 있는 가격과 높은 품질로 1차 선적량이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Ottogi NZ는 2016년 2월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진행했다. 특히 5월부터는 거래량을 기존 20ft FCL에서 40ft FCL로 늘리기까지 했다.

2016년 6월 29일에는 Ottogi NZ이 뉴질랜드 최대 식료품 유통체인 Foodstuffs 바이어와 함께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에 참가해 경천식품 조미 김의 현지 유통망 입점을 논의했다. 그리고 2016년 9월, Foodstuffs 산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New World 매장에 경천식품의 시골김 제품이 들어가게 됐다.

이 성공사례는 비록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이라 할지라도 좋은 가격과 우수한 품질, 그리고 바이어에 대한 빠르고 성의 있는 대응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부 내수기업들의 경우, 현지 바이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가격 책정 및 최소주문량을 고집하며 거래가 불발되는 예가 많았다. 멀리 내다보는 전략으로 바이어에게 한 번쯤 양보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의 변신이 어렵지 않은 않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뉴질랜드는 2019.10. 1.부터 입국 시 ETA(New Zealand Electronic Travel Authority) 비자제도를 도입하여 경유를 포함한 일시 방문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뉴질랜드 입국 전 반드시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ETA를 미리 발급 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ETA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해당 ETA 비자의 신설 목적은 항공기 탑승 전 심사 강화를 통해 공항 입국장 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며 추가로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NZ\$35(약 23 미 달러, 2019. 8. 6. 기준)의 국제방문객 환경보존기금(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도 함께 징수하게 된다. 또한 ETA 승인까지는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사전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ETA 비자신청은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TA 신청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about-visa/nzeta>

방문비자 외에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 비자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로의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카테고리에 맞는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에는 워크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뉴질랜드 비자는 호주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매우 긴 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로의 입국이 결정되면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을 접촉, 비자 발급절차를 빨리 밟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1월 기준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된 상태이며, 자국민의 경우도 2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www.immigration.govt.nz)를 참조하면 되며, 이미 동일한 비자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축업 등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환경보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병균이나 해충 등의 전염을 방지하고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이나 여행객들이 소지한 식품과 동식물 관련 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골프화의 경우 사전에 물로 세척해서 흙이 묻어있지 말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면세품이나 기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총 700 뉴질랜드 달러 이상일 경우 GST와 관세(해당되는 경우)를 지불해야 한다. 식품이나 목공예 제품, 골프화 등은 도착 전 기내에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다고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Xray 검사에서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정밀 심사 및 벌금 부과)까지 당하게 된다. 반입 물품 허용 한도는 담배 50개비(2갑), 위스키 1,125mL 등으로 제한된다. 여행중 사용할 유모차, 망원경, 계산기, 휴대폰, 간단한 악기, 휴대용컴퓨터, 라디오, 운동기구, 카메라, 휠체어 등의 물품은 여행 후 출국 시에 다시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관세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만일 입국 시에 부정확한 신고를 한 경우 즉석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관세청(<https://www.customs.govt.nz/personal/travel-to-and-from-nz/duty-free-shopping/>)이나 1차산업부 산하 동식물 검역기관(www.biosecurity.govt.nz)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64-4) 473-9073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z-ko/index.do

○ 주오克兰드 대한민국 분관

전화번호	64-9)379-0818
주소	Level 12, Tower 1, 250 Queen Street, Auckland 101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index.do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전화번호	64-9)303-2625
주소	7F AMI House, 63 Albert St, Auckland
홈페이지	http://www.nzkoreanedu.com/

○ 오克兰드 한인회

전화번호	64-9)443-7000
주소	5 Argus Pl, Hillcrest, Auckland
홈페이지	https://nz.korean.net/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전화번호	64-4)472 0030
주소	15 Stout Street, Wellington 6011
홈페이지	https://www.mbie.govt.nz

비고	기업 운영, 고용, 기술 혁신 담당
----	---------------------

◦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전화번호	64-4)890-1500
주소	12-22 Hawkestone Street, Thorndon, Wellington
홈페이지	https://www.ird.govt.nz/

◦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전화번호	64-4)931-4600
주소	Statistics House, The Boulevard, Harbour Quays, Wellington
홈페이지	https://www.stats.govt.nz/

◦ 정부정보서비스(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주소	45 Pipitea Street Thorndon Wellington
홈페이지	http://www.data.govt.nz/

◦ 한국 뉴질랜드 경제인 협의회(Korea New Zealand Business Council)

전화번호	64-4)475-8955
주소	PO Box 28041, Wellington
홈페이지	http://knzbc.nz/

◦ 뉴질랜드 헤럴드(The New Zealand Herald)

전화번호	64-9)373-6400
주소	46 Albert St, Auckland Central,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nzherald.co.nz/

◦ 텔레비전 뉴질랜드(TVNZ)

전화번호	64-9)916-7000
주소	100 Victoria St West, Auckland Central,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tvnz.co.nz/

○ 뉴질랜드 미디어웍스 (MediaWorks NZ)

전화번호	64-9)928-9000
주소	3 Flower St, Eden Terrace,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mediaworks.co.nz/

○ 라디오 뉴질랜드(Radio New Zealand)

전화번호	64-4)474-1999
주소	155 The Terrace, Wellington Central, Wellington
홈페이지	https://www.radionz.co.nz/

○ 뉴질랜드무역투자협회(New Zealand Trade Enterprise)

전화번호	64-9)354 9221
주소	PO Box 2364, Shortland Street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nzte.govt.nz/

○ 뉴질랜드연방은행

전화번호	64-4) 472 2029
주소	Reserve Bank of New Zealand 2 The Terrace PO Box 2498 Wellington 6140
홈페이지	https://www.rbnz.govt.nz/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50 NZ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32
2	식품	비빔밥	1인분	12.55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2.55
4	식품	신라면	1봉지	1.05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7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7
8	의료	항생제	12정	13.4
9	교통	오클랜드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3
10	교통	오클랜드 전철요금	기본요금	2.3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1.97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6.46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39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3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6.58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27.9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최저가)	360ml	8.37
18	임금	최저임금	시간	12.44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3166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p	0.25

<자료원 : RBNZ, 뉴질랜드 교육부, MBIE, Countdown, BP, Auckland Transport 외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뉴질랜드 통화는 뉴질랜드달러(NZ \$)로서 1뉴질랜드달러는 100센트이고, 주화는 10, 20, 50센트와 1, 2달러 등이 있으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달러가 있다. 뉴질랜드 지폐는 플라스틱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환전방법

환전은 평일 영업시간에 일반 은행과 공항 환전소 및 주요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고 공항이나 호텔에서는 항상 가능하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20뉴질랜드달러 정도 이상만 되면 대부분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식품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닐 필요가 있다. 환전 환율은 은행, 공항 환전소, 변화가의 사설 환전소 중에서 은행의 환율이 가장 유리하나(크게는 10%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은행 소재지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출장자는 100뉴질랜드달러 정도의 소액은 공항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이용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개인 비밀번호(PIN number)가 부여돼 있다면 전국의 은행이나 쇼핑센터에 있는 자동 현금 출납기(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 시 일부 호텔 또는 상점에서 1%~2% 수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행자 수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나. 교통

교통상황

뉴질랜드의 대중교통으로는 버스와 철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넓은 나라에 비해 인구가 적어, 비용 문제로 대중교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시내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도심은 항상 차들이 많고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버스

뉴질랜드에서 버스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익스프레스 버스, 환승 제도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적용되어 있다. 밤 10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버스 운행이 크게 변경되므로 사전에 버스 시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클랜드 지역 대중교통 정보는 Auckland Transport(<https://at.govt.nz/bus-train-ferry/>)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인근 버스정류장 정보 및 정류장별 버스 라우팅 정보와 시간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Track My Bus 앱이나 AT Bus 앱을 깔면 오클랜드 전역의 버스 노선과 전철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오클랜드는 많은 택시회사가 영업하는 곳으로 택시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일부 대형 호텔 등을 제외하면 대기 중인 택시가 없다. 모두 콜택시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금은 지역과 택시 회사별로 차량에 따라 상이하나 2020년 11월 오클랜드 기준 기본요금 3.50뉴질랜드달러 + km당 2.65뉴질랜드달러 정도이며 택시 회사 및 차량 별로 요금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콜택시 호출 전화번호(오클랜드)는 300-3000이며, 별도의 팁은 주지 않아도 되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우버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크게 늘어서, 일반 택시보다 이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앱(Application)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주 통신사로 스파크(Spark, 구 Telecom), 보다폰(Vodafone), 투디그리(2degree)가 있는데, 회사별로 약정이나 계약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금제는 크게 선불제와 월 지불제로 나뉘고 상세조건은 각 통신사 영업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별정 통신 업체인 Skinny(Spark망 사용), Warehouse Mobile(2degree망 사용) 등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에 진출했다.

인터넷(와이파이)

한국에서 노트북을 가져가면 뉴질랜드 방식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5성급 호텔의 대부분 객실 내에는 인터넷 라인이 연결돼 있다.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시내에 인터넷 카페(주로 한국인이 운영하며 한국어판도 공급)가 많아 이용 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하다(1시간 1~2뉴질랜드달러). 다만, 전반적으로 인터넷 속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느린 편이다. 또한, 공중전화 부스 주변으로 무료 와이파이(시간 및 용량 제한)를 제공하고 있다.

라. 관광명소

◦ 테푸이아(Te Puia)

도시명	로토루아
주소	Hemo Rd, Tihiotonga, Rotorua
운영시간	8:00~17: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로토루아에 있는 간헐천 관광지이다.
비고	https://www.newzealand.com/kr/plan/business/te-puia/

◦ 스카이라인(Skyline Rotorua)

도시명	로토루아
주소	178 Fairy Springs Rd. Fairy Springs, Rotorua
운영시간	9:00~22: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스카이라인 로토루아에는 곤돌라를 타고 로토루아 호수와 시내 및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루지, MTB 바이크 등 다양한 레저활동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 공간이다.
비고	https://www.skyline.co.nz/en/

○ 스카이트워(Skytower)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2 Victoria St. W Auckland
운영시간	9:00~22: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높이 328m로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220m 높이에 있는 전망대는 이음새가 없는 유리창을 통해 360도의 오클랜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에서 번지점프 체험도 가능하며 전망대에는 레스토랑이 있어 오클랜드 시내 야경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비고	https://skycityauckland.co.nz/

○ 켈리탈튼 수족관(Kelly Tarlton's Sea Life)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3 Tamaki Drive, rkei Auckland
운영시간	9:30~17:00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뉴질랜드 해양탐험가인 켈리탈튼이 1985년 설립했다. 120m의 통로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고, 관람객은 머리위로 움직이는 바다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자료원 : 뉴질랜드 관광청 홈페이지 (<https://www.newzealand.com/>)>

마. 식당

- 현지식당

○ 세일즈(Sails)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78-9890
주소	WestHaven Marina, Westhaven Drive
가격	NZ\$ 30 이상
영업시간	12:00~14:30, 18:00~21:00
휴무일	레스토랑 사전 공지에 따라 연말 1~2주 휴무
소개	컨템포러리 스타일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West Haven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 오비츠(Orbits)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63-3000
주소	72 - 78 Victoria St W, Auckland
가격	NZ\$ 30 이상
영업시간	11:30~14:30, 17:30~21:30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스카이 타워 전망대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오클랜드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식사 할 수 있는 곳이다.

○ 프레고(Prego)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76 3095
주소	226 Ponsonby Rd, Ponsonby, Auckland
가격	NZ\$ 25 이상
영업시간	12:00~23:00
휴무일	레스토랑 사전 공지에 따라 연말 1-2주 휴무
소개	오클랜드 베스트 레스토랑에 선정된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현지인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 옥시덴탈(The Occidental)

도시명	오클랜드
전화번호	09-300-6226
주소	6-8 Vulcan Lane Auckland Central
가격	NZ\$ 30 이상
영업시간	7:30~23:30 (주중) 9:00~2:00 (토), 9:00~23:30 (일)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뉴질랜드 홍합을 사용하는 요리와 스테이크

〈자료원 : 각 식당 홈페이지〉

- 한국식당

○ 반상(반상)

도시명	오클랜드
-----	------

전화번호	09-302-1838
주소	1C, 47 High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가격	NZ\$ 15 이상
영업시간	11:00~21: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캐주얼한 한국 식당으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식이 준비되어 있다.

○ 한식(Hansik)

도시명	오uckland
전화번호	09-930-0055
주소	19 Drake St, Freemans Bay, Auckland
가격	NZ\$ 15 이상
영업시간	11:30~14:30, 17:30~22:00
휴무일	레스토랑 사전 공지에 따라 연말 1-2주 휴무
소개	오uckland 베스트 레스토랑으로 꼽힌 한식 레스토랑으로 현지인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자료원 : KOTRA 오uckland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크라운 플라자(Crowne Plaza Auckland)

도시명	오uckland
주소	128 Albert St, Auckland
전화번호	(64 9) 302 1111
홈페이지	http://www.crowneplaza.com/Auckland&lrn;
숙박료	NZ\$ 220 이상
소개	오uckland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Grand Millennium Hotel)

도시명	오uckland
주소	71 Mayoral Dr, Auckland

전화번호	(64 9) 366 3000
홈페이지	https://www.millenniumhotels.com/en/auckland/
숙박료	NZ\$ 250 이상
소개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o 노마드 호스텔(Nomads Auckland Backpackers Hoste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6-20 Fort St, Auckland
전화번호	+64 (09) 300-9999
홈페이지	https://nomadsworld.com/new-zealand/nomads-auckland-hostel/
숙박료	NZ\$ 35 이상
소개	배낭여행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 호스텔

〈자료원 : 각 호스텔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뉴질랜드의 치안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러나 주말 저녁 오�클랜드 시내 중심 상가 밀집 지역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이 지역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평상시에도 일몰 후에는 차량이 없이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빈집이나 차를 터는 좀도둑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일부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하며 보험의 긴급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2) 여권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 분실신고는 여권을 잃어버린 당사자 본인이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서(Lost Property Report)"와 함께 직접 대사관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분실신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링크를 통해 상세히 확인 가능함
(<http://overseas.mofa.go.kr/nz-ko/index.do>)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경찰, 구급: 111

- 교통 정보: 0900-33-222(Transit NZ)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임대의 경우는 일반 단독 주택과 시내 아파트 등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다. 통상 임대료는 주간 단위로 결정돼 2주마다 지불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해서 매월 지불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2018년 12월 11일 이후부터 폐지되었으며 임대인이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 보증금(Bond Fee)은 2~4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기관에 예치해 일방(대부분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변제하는데 사용한다.

주택 전체를 임차하지 않고 방 하나만을 임차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임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집기와 가구를 구비한 임대 주택을 구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가 더 비싸며, 입주와 전출할 때 가구와 집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손실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통상 입주 시 부동산 업자나 집주인에게 입주 전 주택 하자에 대해 미리 서면이나 사진으로 통보해 이사 나올 때 부당한 수리 비용을 지불(원상복구)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택의 구매 때도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수리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당한 비용을 거래가격에서 할인받는 것이 좋다.

최근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보급이 부족해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신규주택 건설, 투자제한 정책 등의 정부 규제로 현재 소강상태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요로 인해 주택 임대 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화

각 지역의 통신회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번호를 부여받고 대부분 당일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전화선 임차료로 일정액이 부과되고 사용량에 따라 이용료가 정해지는데, Auckland 지역 내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 일반 전화 라인으로 통화할 경우 사용료가 무료이다.

그러나 일반 전화로 시외 전화, 국제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각각 정해진 사용료가 부과된다. 일반 전화로 국제 전화를 이용할 경우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식품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할 경우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070 인터넷전화 보급이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핸드폰이 일반화되면서 가정에서 일반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압/플러그

전기 규격은 한국과는 다른 230~240V, 50Hz, 3 PIN 플러그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에 비치된 전기 플러그는 모양이 달라 한국의 제품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플러그를 구입해 부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플러그는 공항 입국장의 매점이나 한국 식품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식수

뉴질랜드 수도물은 식수로 사용 가능하다. 레스토랑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수는 대부분 수도물이며 생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뉴질랜드에서는 대부분 수입된 중고차를 구입해 이용한다. 중고차는 직접 주말 오전에 열리는 Turners Auction(www.turners.co.nz)에 참가해 구입하거나 중고차 딜러 가게를 통해서 구입, 혹은 뉴질랜드 온라인 장터(www.trademe.co.nz)에서 구입하는 법이 있다.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채무 현황, 사고 여부,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carjam.co.nz)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내용은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나 채무나 사고 등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9.90뉴질랜드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차량가격

뉴질랜드는 자체 생산 차량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동차 메이커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A New Car Prices: <https://www.aa.co.nz/cars/buying-a-car/car-buying-guide/new-cars/new-car-prices/>

운전면허 취득

2013년 5월 뉴질랜드 교통국은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질랜드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 체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 면허증과 영사관에서 공증받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뉴질랜드의 모든 은행은 반드시 Reserve Bank에 등록되어야 하고 주요 뉴질랜드 은행은 다음과 같다.

- ANZ Bank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Bank of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Westpac New Zealand: 호주계 은행
- ASB Bank: 호주계 은행
- Kiwi Bank: 뉴질랜드 은행

뉴질랜드 은행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은행 수수료가 많이 있다. 은행 선택 시에는 은행 수수료와 자금 이체 방법, 거주지 주변에 지점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 개설은 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사용료를 자동이체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 지점(전화: 64-9-366-1000)을 이용하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ASB, BNZ, Westpac 및 ANZ 등의 은행에도 교민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에 유선으로 시간 약속을 잡는 것이 좋으며, 구비 서류로는 주소지 증빙서류(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각종 거래 명세서 등), 영문주민등록등본, 여권이 필요하다. 주소지 증빙의 경우 우선 은행에서 해당 주소로 발송

한 주소지 증빙 우편물을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동반된다.

영문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민원 24시(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ANZ 은행에서는 영문주민등록등본을 주소지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통장 개설 후 카드 수령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금액의 비상금은 남겨두고 돈을 예금하는 것이 좋다.

2016년부터 뉴질랜드 정부의 외국인 대출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무비자 외국인에 대한 은행계좌 개설이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으로, 취업 비자나 학생비자와 같은 적합한 비자 취득 후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Auckland International College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IB 준비과정, IB Diploma
학비	NZD 33,000
홈페이지	http://www.aic.ac.nz

〈자료원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현지학교

o Auckland Grammar School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NCEA, CIE
학비	영주권자 이상 무료
홈페이지	https://www.ags.school.nz

o Epsom Girls Grammar School

도시명	오클랜드
커리큘럼	NCEA
학비	영주권자 이상 무료
홈페이지	http://www.eggs.school.nz

o Westlake Girls High School

도시명	오클랜드
-----	------

커리큘럼	NCEA
학비	영주권자 이상 무료
홈페이지	https://www.westlakegirls.school.nz/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마. 병원

◦ Waitakere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55-75 Lincoln Rd, Henderson, Auckland
전화번호	09-839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North Shore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24 Shakespeare Rd, Takapuna, Auckland
전화번호	09-486 89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Auckland City Hospital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2 Park Rd, Grafton, Auckland
전화번호	09-367 0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Farmers

주소	뉴질랜드 전역 58개 매장 보유
홈페이지	https://www.farmers.co.nz/

○ Smith and Caughey's

주소	253-261 Queen St, Auckland
홈페이지	https://www.smithandcaugheys.co.nz/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식품점

○ 한양 마트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85 Wairau Rd, Glenfield,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 로얄 세이브 마트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161 Hobson St,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 북마트

도시명	오클랜드
주소	75 Mount Eden Rd, Mt Eden Auckland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

〈자료원 :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없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New Year's Day	2021-01-01	신정 연휴
New Year's Day	2021-01-04	신정 연휴
Auckland Anniversary	2021-02-01	오클랜드 기념일(오클랜드 지역만 휴일임)
Waitangi Day	2021-02-08	영국-마오리 원주민 간 평화조약 체결일
Good Friday	2021-04-02	부활절 연휴

Easter Monday	2021-04-05	부활절 연휴
ANZAC Day	2021-04-26	현충일
Queen's Birthday	2021-06-07	영국 여왕 탄신일
Labour Day	2021-10-25	노동절
Christmas Day	2021-12-27	크리스마스
Boxing Day	2021-12-28	박싱데이

〈자료원 : www.employment.govt.nz〉

9. KOTRA 무역관 안내

오클랜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무역관 주소: Level 16, Huawei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 대표 전화: +64-9-373-5792
- 팩스 번호: +64-9-373-2952
- 이메일: akl_ktc@kotra.or.kr

공항-무역관 이동

- 오클랜드 국제공항
 -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한 후 입국심사 및 수하물 검사를 한다.
 - 특히 식품을 소지하였을 때 검역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오클랜드 공항버스
 - 버스운임: 18 뉴질랜드달러(10~30분 간격, 24시간 운행) Town Hall, 380 Queen St 하차한다.
 - Queen Street(Auckland Central Backpacker 앞) 하차한다.
 - 하차 지점에서 무역관까지 도보 10분(무역관 주소 이용)이다.
- 택시
 - 택시운임: 약 75뉴질랜드달러 (Corporate Cabs 기준임)이다.
 - 무역관 건물 주소를 기사에게 알려주고 무역관 입주 건물 앞에서 하차한다.
- 셔틀 미니밴
 - 셔틀운임: 시티센터 도착 기준 최저가격 약 25뉴질랜드달러(1인당)이다.
 - 무역관 인접 크라운플라자호텔을 기사에게 알려주고 호텔에 하차 후 옆 빌딩인 화웨이센트로 이동한다.
 - 사전 예약 필수(www.supershuttle.co.nz) 예약시간대와 인원수 및 수화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 승차공유서비스
 - 최근 뉴질랜드에서도 일반적인 승차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 오클랜드 공항은 별도 승차공유서비스 차량을 위한 픽업 공간이 있다.
 - 승차운임은 무역관까지 약 60뉴질랜드달러이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